

# 한국아이오티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소개서

## 1 설립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IoT·BlockChain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 제7조 및 8조)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4. 17.>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09. 5. 21.]

- 목적: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융합 연구 국가정책 R&D 수행

## 2 연혁

- 2004. 05. 텔레메트릭스연구조합 설립(2004.05)
- 2018. 12. 한국IoT·BlockChain기술연구조합 명칭 변경(과기부. 2018.12)

## 3 연구실적

- 2009.03 : 국가 미래 유망기술 재난방재분야(21) 선정(산자부)
- 2010.03~2011.03 : 여수 석유화학단지 재난 방재 네트워크 설계(산자부/행정)
- 2011.04~2013.06 : 국가 신성장 동력 구축사업을 위한 설계 컨설팅, 지식경제부(산업기술정책국)
- 2018.12. : 차세대 IIOT Block Chain 플랫폼 개발

## 4 중점 연구과제

-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와 연관된 솔루션(산업용 블록체인 기반의 무선 인프라 기술적용) 및 재난재해 연구·컨설팅
- 북방: ICT 물류, 물류 DATA 플랫폼 개발(북방, 극동 경제권 확대)
- 철도: 부산-TCR-TSR 연계한 기술개발
- 재난재해: 일반재해와 산업재해, 지하 매설물 등의 재난재해 솔루션 연구개발
- 디지털 물류 및 Cold chain 분야
  - 바이오·의약품·식재료 등의 콜드체인 관리와 물류 디지털화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및 IoT 운영 시스템개발
  - 산업용 IoT 및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솔루션 연구개발
  -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플랫폼 구축작업

## 5 컨설팅 제공

-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현하는 기술의 핵심 부분은 M2M, 센서네트워크, 유무선 연결 기술, 블록체인, IIOT 플랫폼 등의 분야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와 산업의 선행 사례가 부족하여 관련 규격, 기준, 지침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
-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검토 하고 있는 공공(지방자치단체), 제조 및 물류유통 기업을 위해서 한국아이오티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에서는 플랫폼 역할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

## 6 조합원 자격

-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IoT·블록체인 제품의 제조 및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및 신규 사업 분야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및 특별조합원으로서 관련 연구기관, 관련단체, 산·학·연 전문가로 한다.

- 조합원의 가입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가입금(입회비)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한다.

## 7 **조합원의 의무**

- 조합원은 이 조합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합원은 조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 사업 수행에 상호 협조할 의무를 진다.
- 조합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및 사무소의 변경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